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제안경위

가. 대상안건

의안번호	제출자	의안명
제438호	정선희 의원 외 7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9호	정선희 의원 외 6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제출일자 : 2021년 12월 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2월 8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등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지방자치법」 개정 인용 조문 반영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2)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지휘·감독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5조)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사무국장 업무분장 사무 추가(안 제3조)

2)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규정(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로 검토 보고드립니다.

-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2021.1.1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전부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 바, 개정 법 제41조에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게 한 것에 따른 조치임.

-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p><신 설></p> <p>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p> <p>② <u>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u></p>	<p>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p> <p>① <u>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u></p> <p>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
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
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
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
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
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
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
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
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
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
항을 처리한다.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에 “사무국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이는 개정 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치사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직급 등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를 정한 것임.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도입하고, 분장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